

1. 개정이유

구급활동상황을 현실에 맞게 기록하도록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정하고,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한 경우 추가로 세부상황표를 기록하도록 하며, 구급거절·거부 확인서,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추가기록 규정(안 제18조 ③, ⑤항)
 - 구급대원이 심정지환자, 중증외상환자, 심·뇌혈관질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한 경우 추가로 세부상황표를 기록하도록 법령근거 마련
 -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(별지 제6호서식)를 시행규칙에서 삭제
 - 세부상황표의 서식 및 기록방법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개선
- 나. 구조·구급에 관련된 일지 등 이동단말기 작성 규정(안 제18조의2)
 - 구조·구급대원이 이동단말기로 구조·구급에 관련된 일지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
- 다. 구급활동일지 서식 개정(안 별지 5호서식)
 - 구급활동상황을 현실에 맞게 기록하도록 개선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0. 6월중) 예정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급대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출동을 한 경우에는 세부상황표를 작성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1. 심폐정지환자 :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
2. 중증외상환자 :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
3. 심·뇌혈관질환자 : 심뇌혈관질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

⑤ 제3항의 세부상황표의 작성 및 기록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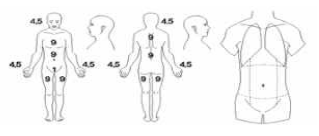
제18조의2(이동단말기 작성) 구조·구급대원은 구조차와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조·구급에 관련된 일지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.
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방서		119구급대(안전센터)		구 급 활 동 일 지				119구급대장(센터장)	
전화)		-						결재	
차량번호		구분		[]특수일반 []특수특별 []헬기 []펌플런스 []기타					
구급출동	신고 일시	:	신고자	전화번호		신고방법		[]일반전화 []휴대전화 []기타()	
	출동 시각	:	환자	성명	나이	세	성별	[]남 []여	생년월일
	현장 도착	:	인적	주소	(Tel)				
	환자 접촉	:	사항	직업	[]영아 []유아 []학생 []주부 []자영업 []직장인 []무직 []기타() []외국인(국적:)				
	거리	km	보호자 등	성명	관 계	전화번호			
	현장 출발	:	환자 발생	[]집 []집단거주시설 []도로 []도로와 교통지역 []오락/문화 시설 []학교/교육시설 []운동시설 []상업시설 []의료관련시설 []공장/산업/건설시설 []일차산업장 []바다/강/산/논밭 []기타()					
	병원 도착	:	장소(택일)						
	귀소 시각	:	환자 증상	■ 통증([]두통 []흉통 []복통 []요통 []분만진통 []그 밖의 통증) ■ 외상([]골절 []탈구 []염좌 []열상 []찰과상 []타박상 []절단 []압박손상 []화상) []의식장애 []기도이물 []기침 []호흡곤란 []호흡정지 []심계항진 []가슴불편감 []심정지 []경련/발작 []실신 []오심 []구토 []설사 []변비 []배도장애 []객혈 []토혈 []혈변 []비출혈 []질출혈 []그 밖의 출혈 []고열 []저체온증 []어지러움 []마비 []전신쇠약 []정신장애 []그 밖의 이물질 []기타()					
출동 유형	[]정상 []오인 []거짓 []최소 []기타	(복수 선택 가능)							
환자 발생 유형	[]질 병	병 력 ([]없음 []미상)		[]고혈압 []당뇨 []뇌혈관질환 []심장질환 []폐질환 []결핵 []간염 []간경화 []알레르기 []압(종류:) []신부전(투석여부:) []기타()					
	[]교통사고	사상자	[]운전자 []동승자 []보행자 []자전거 []오토바이 []그 밖의 탈 것() []미상						
	[]그 외 외상 (택일)	[]낙상 []추락 []그 밖의 둔상 []열상 []자상 []관통상 []기계 []농기계							
	[]비외상성 손상 (택일)	[]중독 []익수 ■ 질식([]연기흡입 []외력에 의한 압박 []이물질에 의한 기도막힘) ■ 화상([]화염 []고온체 []전기 []물) []화학물질 []동물/곤충 []자연재해 []온열손상 []한랭손상 []성폭행 []상해 []기타()							
	범죄의심		[]경찰통보 []경찰인계 []긴급이송 []관련기관 통보						
[]기타	[]임산부 []단순주취 []기타()								
환자 평가	의식상태	1차 (:) []A []V []P []U	2차 (:) []A []V []P []U	사고부위(복수선택 가능)					
	동공반응	좌 []정상 []축동 []산동 []축정불가 우 []정상 []축동 []산동 []축정불가	[]반응 []무반응 []축정불가 []반응 []무반응 []축정불가						
	혈력 징후	시각	혈압	맥박	호흡	체온	SpO ₂	혈당체크	
	[]불가	:	/ mmHg	회/min	회/min	℃	%	mg/dL	
	[]거부	:	/ mmHg	회/min	회/min	℃	%	mg/dL	
환자분류	[]응급 []준응급 []잠재응급 []대상 외 []사망([]추정)								
구급대원 평가소견	• 주 호소: • 발생시간([]추정):								
응급 처치 (복수 선택 가능)	■ 기도확보: []도수조작 []기도유지기(airway) []기도삽관(Intubation) []성문위 기도유지기(supraglottic airway) []흡인기 []기도폐쇄처치 ■ 산소투여: L/min([]비관 []안면마스크 []비재호흡마스크 []BVM []산소소생기 []포켓마스크 []네블라이저 []기타) ■ CPR([]실시 []거부 []DNR []유보) []ECG ■ AED([]Shock []Monitoring) []기타() ■ 순환보조([]정맥로 확보 []수액공급(cc) 확보) []약물투여() ■ 고정([]경추 []척추 []부목 []머리) ■ 상처처치([]지혈 []상처드레싱) []분만 []보온([]온 []냉)								
의료 지도	의료지도	[]연결 []미연결	요청시간	:	요청방법	[]일반전화 []휴대전화([]음성 []화상) []무전기 []기타()			
	의료지도 기관	[]소방 []병원 []기타()	의료 지도 내용	[]응급처치: []airway []Intubation []supraglottic airway []ECG []AED []CPR []IV []BVM []산소투여 []고정 []상처처치 []혈당체크 []보온 []기타() []약물투여: []NS []DW []NTG []기관지확장제 []에피네프린 []아미오돈론 []기타() []병원선정 []환자평가 []CPR유보·중단 []이송거절 []이송거부 []기타()					
	의료지도 의사	성명							
환자 이송	이송 기관명		도착시간 (km)	의료기관 등 선정자		재이송 사유		환자 인수자	
	1차	[]관할 []타시·도	(km)	[]구급대 []119상황실 []구급상황센터 []환자/보호자 []의료기관 거부 등 []기타()		■ 병상 부족([]응급실 []수술실 []입원실 []중환자실) []전문의 부재 []환자/보호자의 변심 []의료장비 고장 []1차 응급처치 기탁() []주취자 등		[]의 사 []간호사 []응급구조사 []기 타	
2차	[]관할 []타시·도	(km)	[]구급대 []119상황실 []구급상황센터 []환자/보호자 []기타()		■ 병상 부족([]응급실 []수술실 []입원실 []중환자실) []전문의 부재 []환자/보호자의 변심 []의료장비 고장 []1차 응급처치 기탁() []주취자 등		[]의 사 []간호사 []응급구조사 []기 타		
연계 이송	[]소방 활동	[]	※ 본 구급대는 환자의 추가 손상 및 악화(사망 등) 방지를 위해 응급처치에 적합하고 최단시간 이내에 이송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 하였으나, []씨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사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위 내용을 고지합니다. (서명 또는 인)						
마감	[]최소 ■ 타처량([]병원차 []경찰차 []자기용 []택시 []헬기) []환자 없음 []현장처치 []이송거부 []이송거절 []경찰인계 []이송 불필요 []사망 []기타()								
출동 인원	의 사	소속: 성명: (서명 또는 인)							
	구급대원(1)	[]1급 []2급 []간호사 []구급교육 []기타	계급	소방	성명	(서명 또는 인)			
	구급대원(2)	[]1급 []2급 []간호사 []구급교육 []기타	계급	소방	성명	(서명 또는 인)			
	운전요원	[]1급 []2급 []간호사 []구급교육 []기타	계급	소방	성명	(서명 또는 인)			
기 타	[]1급 []2급 []간호사 []구급교육 []기타	성명 (서명 또는 인)							
장애 요인	[]없음 []장비 이상 []보호자 요구 []원거리 병원 []원거리 출동 []민취차 []폭행 []언어폭력 []환자 과체중 []기관협조 미흡 []환자위험 불명확 []교통정체 []폭우 []폭설 []기타()								
일련 번호	재난번호		뒷장이 동시에 기록되도록 제작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)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<u>다만, 구조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조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.</u> ② (생략)	제17조(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<단서 삭제></u> 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)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(이하 “구급활동일지”라 한다)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<u>다만,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.</u> ② (생략)	제18조(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<단서 삭제></u> ② (현행과 같음)
③ 구급대원은 구급활동 중 심폐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응급처	③ 구급대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출동을 한 경우에는 세부상황표

<u>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</u>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를 작성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</u> <u>1. 심폐정지환자 :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</u> <u>2. 중증외상환자 :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</u> <u>3. 심 · 뇌혈관질환자 : 심뇌혈관질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</u>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3항의 세부상황표의 작성 및 기록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/u> <u>제18조의2(이동단말기 작성) 구조</u> <u>· 구급대원은 구조차와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조 · 구급에 관련된 일지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.</u>
--	--